

東北亞의 海洋秩序와 國際法

김 부 찬

제주대

I. 序 論

1. '海洋에 관한 國際法'으로서의 海洋法은 精神的, 環境的, 經濟的 그리고 軍事的 戰略的으로 人類에게 유용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海洋을 國際社會 構成員들이 합리적이면서도 질서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法體制로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海洋法은 海洋問題에 관한 國際關係에 있어서 國際社會 構成員들을 구속하는 規則들, 즉 海洋의 法的 體制와 그 利用에 관한 실질적인 原則의 수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海洋利用에 관하여 國際社會의 構成員들이 서로 대립 충돌하는 것을 사전에 調整하고 豫防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海洋의 法秩序는 慣習法的의 형태로 성립되어온 海洋法 및 1958년에 체결된 4개의 海洋法協約 즉, 領海 및 接續水域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Territorial Sea and the Contiguous Zone), 公海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High Seas), 漁業 및 公海生物資源保存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Fishing and Conserv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of the High Seas) 그리고 大陸棚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Continental Shelf) 등의 一般條約 및 國家들 간의 수많은 特別條約들에 의하여 규율되어 왔다. 한마디로 이러한 전통적인 海洋法體制는 '좁은 領海와 넓은 公海'라고 하는 基本原則에 입각하여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2년 유엔 海洋法協約(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의 채

택을 前後로 海洋法秩序는 많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東北亞海域國家 상호간에도 海洋管轄水域의 境界劃定問題, 大陸棚開發問題, 漁業資源開發 및 保存問題, 그리고 海洋環境保全問題 등 많은 문제가 새롭게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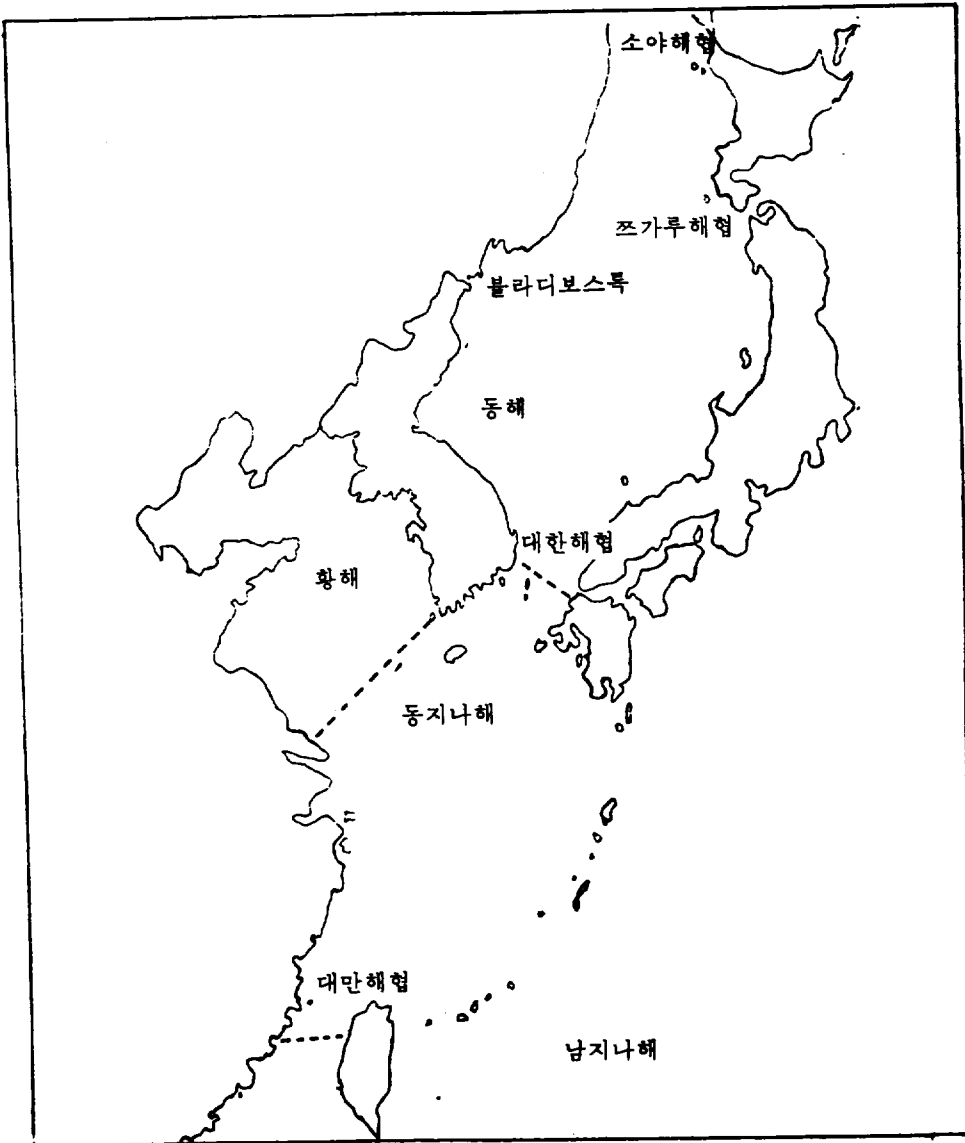
2. 북쪽의 韓半島로부터 남쪽의 싱가포르에 이르는 아시아대륙의 東岸과 日本列島에서 시작하여 琉球列島(Ryukyu Islands), 臺灣,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 수마트라 등의 섬에까지 연결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바다를 보통 中國海(the China Sea)라고 부르며, 이를 臺灣海峽을 경계로 南北으로 나누어 보통 북쪽을 東支那海(the East China Sea), 남쪽을 南支那海(the South China Sea)라고 부른다. 그리고 東支那海를 보통 東北亞海域(the Northeast Asia Seas)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이를 보다 세분하면 韓半島 南端과 揚子江을 연결한 線을 기준으로 할 때 북쪽의 韓半島와 中國東海岸 사이의 바다가인 黃海(the Yellow Sea : 西海), 남쪽의 臺灣과 韓半島 사이의 바다가인 狹義의 東支那海, 韓半島와 日本 사이의 東海(the East Sea, the Sea of Japan : 日本海), 그리고 소련의 사할린 동부와 캄차카半島 사이의 오흐츠크海(Sea of Okhotsk)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東北亞海域에 속하는 네개의 바다 중 오흐츠크海는 사실상 소련의 內海로 되어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지 않으나 다른 세개의 바다는 그 周邊國들 사이에 주요한 활동무대 및 이해관계의 초점이 되어왔다(그림1참조).

3. 韓國은 東北亞海域을 중심으로 하여 日本, 中國, 臺灣 그리고 소련 등의 강대국들과 隣接(adjacent) 또는 對向하고(opposite) 있으며, 北韓과는 分斷國體制로서 상호간의 特殊關係를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美國은 직접적인 東北亞海域國家라고는 할 수 없으나 韓美 相互防衛條約과 美日 安全保障條約을 통한 韓國 및 日本과의 軍事的 協力關係로 인하여 東北亞海域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政治的 軍事的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는 間接的 周邊國이라고 할 수 있다.

本稿는 東北亞海域의 戰略的 重要性, 地理的 特徵 그리고 現行 法秩序를 검토한

다음, 韓國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海洋秩序의 構造變化에 따른 東北亞海域의 秩序變化의 움직임과 周邊國 상호간의 利害關係의 對立樣相을 고찰하고, 나아가서 東北亞海域國 상호간의 海洋秩序確立을 위한 方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림1> 동북아해역도



II. 東北亞海域의 戰略的 重要性 및 地理的 特徵

1. 東北亞海域의 戰略的 重要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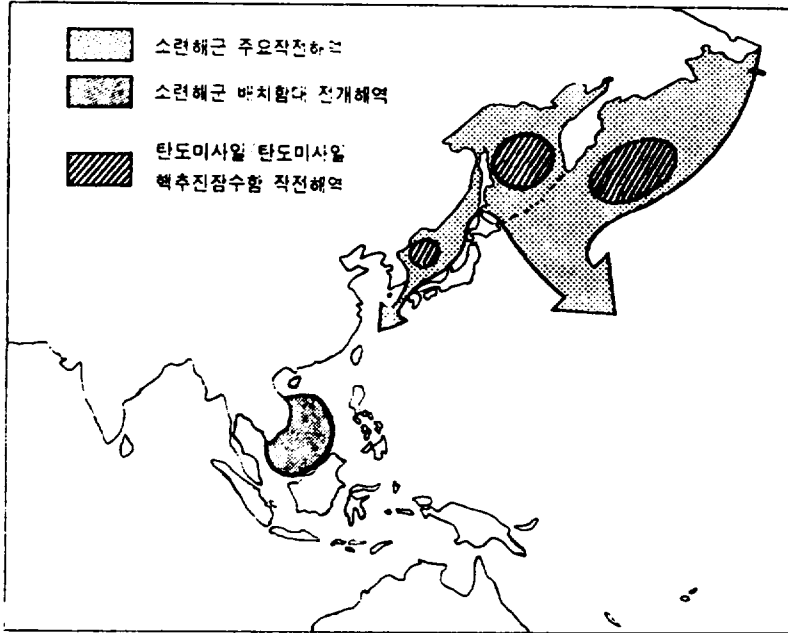
東北亞海域은 周邊國들의 貿易 및 軍事의 目的을 위한 주요 活動 무대 및 海上通 航路로 이용되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국제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東支那海는 北으로 東海와 黃海, 南으로 南支那海와 필리핀海, 그리고 東으로는 太平洋으로 이어지는 交通량의 交叉點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海路이며 韓國, 中國, 臺灣, 日本, 소련 그리고 美國 등 상호 競爭關係 내지 敵對關係에 놓여있는 國家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언제라도 紛爭이 야기될 수 있는 海域이다. 東北亞海域은 蘇聯海軍의 주된 활동무대이며(그림2 참조) 특히 東支那海는 蘇聯海軍의 海港인 블라디보스톡과 東南亞의 거점인 캄란(Cam-Rahn)을 연결하는 주된 航路로서 이용되고 있으며, 美國의 입장에서 보면 소련의 對南進出을 저지하기 위한 海上軍事力의 維持 및 安全 海路維持上 東北亞海域의 戰略的 重要性이 크게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韓國, 日本 및 中國의 입장에서 東北亞海域은 國家安保上 매우 중요한 戰略的 價値가 있다.

海上航路와 관련하여 특히 濟州海峽, 大韓海峽(大韓海峽西水路) 및 對馬海峽(大韓海峽東水路), 日本의 本州와 北海道 사이의 津輕海峽(Tsugaru Strait), 소련의 사할린 섬과 日本의 北海道 사이의 宗谷海峽(Soya Strait), 그리고 東海의 북쪽 출구인 사할린(Sakhalin)과 소련의 연해주 사이의 타타르海峽(Tatar Strait) 등이 중요하다(그림 3 참조).

2. 東北亞海域 地理的 特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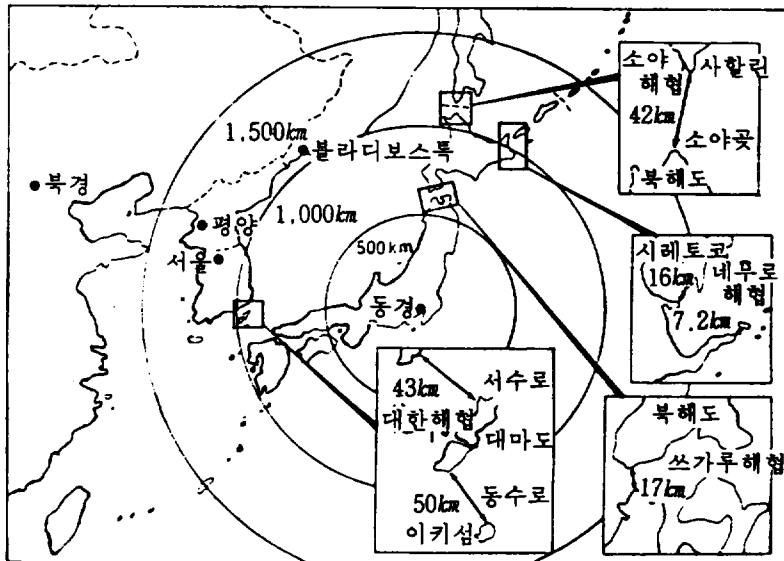
1) 黃海 및 東支那海는 韓國, 中國, 日本에 의하여 둘러싸인 半閉鎖海로 분류되는 海域으로서 水深이 비교적 얇고 대부분이 大陸棚으로 되어 있는 海域이다. 黃海와 東支那海는 상호 연결된 海域으로서 편의상 구분되고 있을 뿐이다.

<그림2> 소련해군의 활동해역



출처 : Department of Defense, *Soviet Military Power* (Washington, D.C : Department of Defense, 1986), p.127.

<그림3> 동북아시아의 해협들



출처 : 「防衛白書」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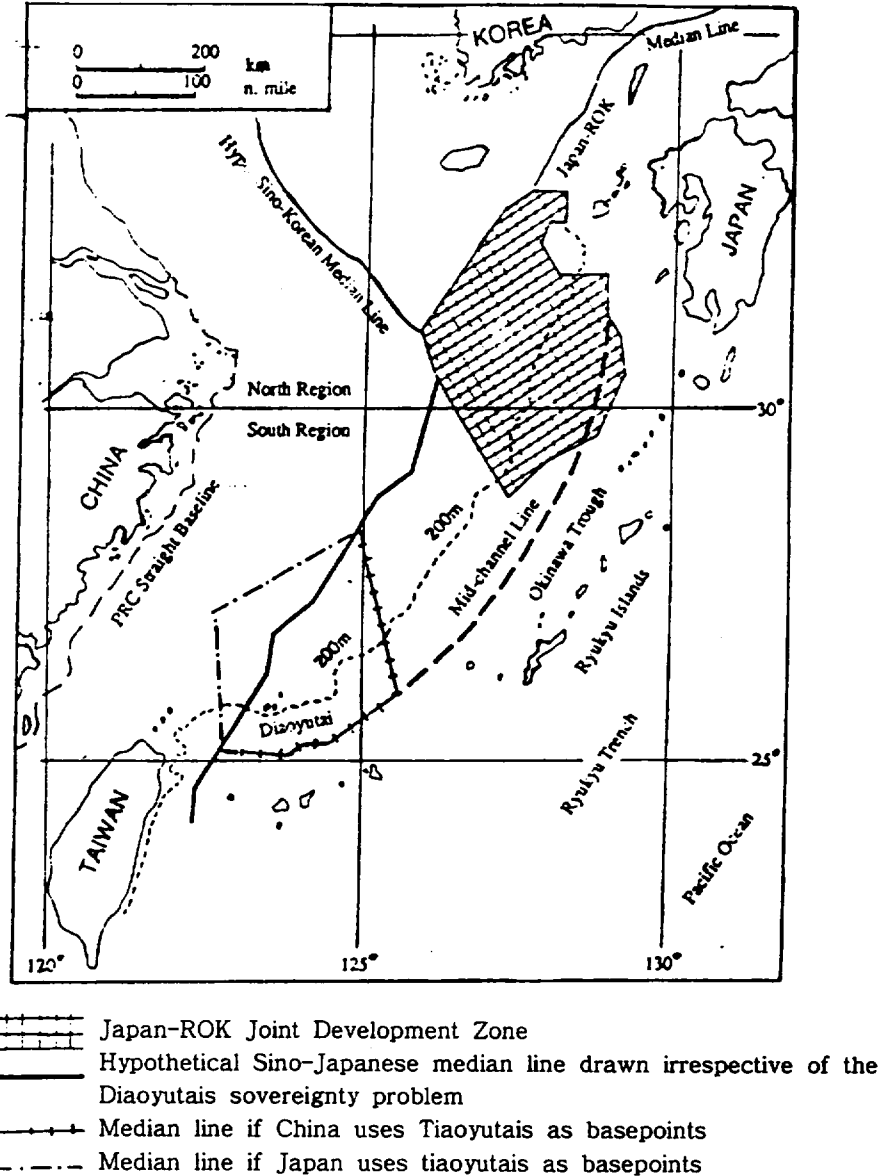
黃海는 面積이 404,000km²로서 南北이 약 1,000km, 東西가 약 700km의 거리이고 容積은 17,620km³에 달한다. 水深은 대부분 60~80m로서 평균 水深 44m, 最大水深 103m의 淺海로 되어 있다. 한편 東支那海는 面積이 752,000km²이며 容積은 263,000km³이다. 東支那海는 오키나와 海溝에 이르기까지는 水深이 100m내외의 淺海大陸棚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오키나와 海溝에 이르러 最大水深이 2,000m 이상으로 급격히 沒入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東支那海의 海底層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臺灣에서 琉球列島 北西方海域을 거쳐 日本 九州에 이르는 水深 150~170m의 大陸棚으로 이것은 渤海에서 黃海 및 東支那海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臺灣海峽을 거쳐 南支那海의 大陸棚을 형성하고 통킹灣에 이르기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오키나와 海溝(Okinawa Trough)로 구분된 海域으로서 대부분 水深 1,000m 이상 2,000m의 비교적 깊고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海域이다(그림4참조). 東支那海의 大陸棚은 오키나와 海溝에 의하여 단절되고 있는 셈이다.

黃海와 東支那海의 海底에는 黃河와 揚子江 등에서 유출된 堆積物의 海底數地에 積적되어 매우 두꺼운 堆積層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臺灣 근처의 堆積層은 그 두께가 9km나 되며 그 중에는 5km 이상의 新第3期 堆積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유엔 極東經濟委員會의 아시아海域鑛物資源共同探查委員會(UN 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Committee for Coordination of Joint Prospecting for Mineral Resources in Asian Offshore Areas : ECAFE/CCOP)의 報告書에 의하면 臺灣과 日本 사이의 大陸棚은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석유매장지역의 하나이며 黃海 大陸棚도 석유부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그림 5 참조).

黃海 및 東支那海는 韓國, 日本, 北韓, 中國 등 주변국들에 있어서 주요한 沿近海 漁場이 되고 있다. 특히 韓國은 沿近海漁業의 80~90%, 中國은 80%를 黃海 및 東支那海 漁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 黃海 및 東支那海 漁場은 魚族資源의 과도한 포획으로 인하여 일부 중요 魚種은 資源回復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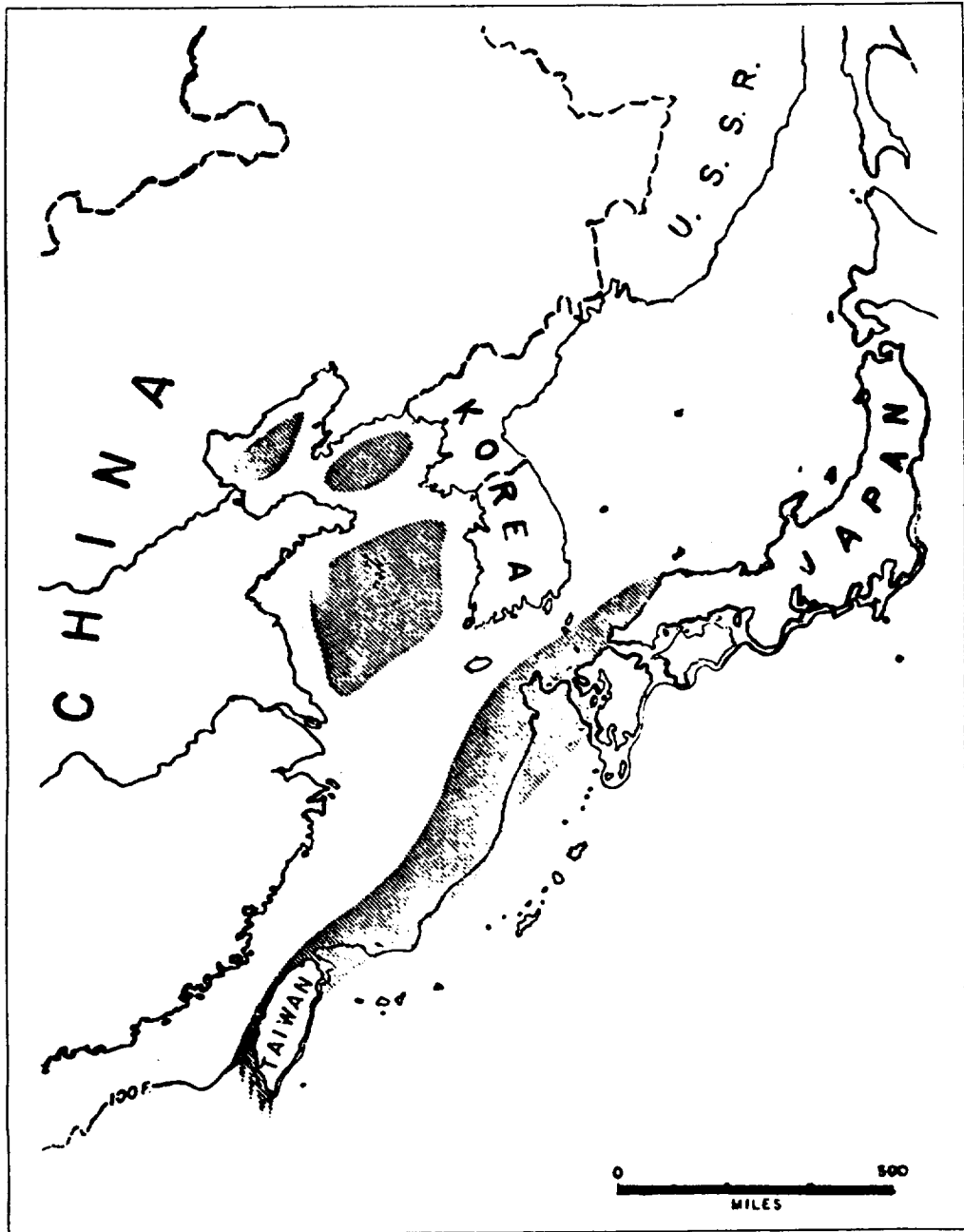
2) 東海는 韓國, 소련, 日本, 北韓 등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半閉鎖海이다. 東海는 타타르海峽과 소아海峽으로 오호츠크해와 연결되고 쓰가루海峽에 의하여 北西太平洋과 연결되고 있으며 大韓海峽 및 對馬海峽에 의하여 東支那海와 연결되고 있다.

<그림4> 東支那海



Source : Base Chart from Ying-jeou Ma, *Legal Problems of Seabed Boundary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Baltimore : Occasional Papers/ Reprint Series i Contemporary Asian Studies, Inc., 1984, p.264.

<그림5> 동북아해역의 석유매장가능지역



Source: Prospective oil and gas fields beneath the Korean Strait,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based on ECAFE Technical Bulletin, p.17, Vol. 1967)

東海는 南北으로 약 1,700km 東西로 약 1,110km에 달하고 그 面積이 1,007,600km², 容積이 1,698,300km³이나 되며 水深은 대부분 1,000m이상으로서 平均水深 1,700m 이고 最大水深은 4,049m에 달한다.

東海의 大陸棚은 黃海 및 東支那海에 비하여 매우 좁으나 隱岐島와 韓國의 蔚山을 잇는 선以南은 광대한 大陸棚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浦項以南 對馬島까지의 海域은 기본적인 海底地質構造가 臺灣에서 부터 발달된 第3期 堆積岩層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서 石油나 天然가스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海域이다.

東海의 大和堆(Yamato Bank) 부근은 暖流와 寒流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暖流性 魚族과 寒流性 魚族이 매우 풍부한 潮境漁場을 이루고 있어서 이전부터 東海는 北太平洋西部漁場의 中心漁場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

Ⅲ. 東北亞海域의 法秩序 및 變化의 背景

1.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온 慣習法的 規則 및 1958년에 체결된 4개의 제네바 海洋法協約에서 정립된 原則 등에 입각하여 東北亞海域國家들은 일방적인 國內的措置에 의하여 領海, 接續水域, 大陸棚, 漁業水域 등을 설정하여 왔으며 이러한 國內管轄水域의 範圍 및 境界劃定을 둘러싸고 상호간에 많은 利害의 대립과 紛爭의 양상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지난 30여년간 東北亞海域은 東西冷戰의 최전방으로서 周邊國들간에 첨예한 對立과 葛藤이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關係構造 때문에 상호 協力的 海洋秩序가 이루어질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利害關係의 대립을 調整하고 紛爭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國家들 간에 外交的 交渉 및 協商이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몇개의 兩者條約이 체결되어 있을 뿐이다. 東北亞海域國家들은 自國의 利害關係에 따라 前記한 海洋法關係條約에의 參與與否를 결정함으로써 제네바 海洋法條約이 東北亞海域의 法秩序의 基礎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아직 東北亞海域의 統一的인 法秩序는 확립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유엔 海洋法協約의 채택을 전후로 海洋法秩序는 많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變化는 東北亞海域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 海洋法協約은 沿岸國의 海洋管轄權의 質的 量的 擴大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深海底(deep sea-bed)를 人類共同遺産(common heritage of mankind)으로 규정하는 등 새로운 海洋秩序를 확립하고 있다. 유엔 海洋法協約은 沿岸國으로 하여금 最大 12海里의 領海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經濟的 管轄權을 위한 200해리 排他的 經濟水域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最大 350해리에 이르기까지 大陸棚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海洋秩序의 태동은 沿岸國들로 하여금 海上安保와 海洋資源確保를 위하여 管轄水域에 대한 보다 강력한 管轄權 및 統制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지금까지의 自由海洋時代로부터 海洋分割의 時代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의 各國들은 다투어 200해리 排他的 經濟水域 또는 漁業水域을 선포하였으며 보다 넓은 범위의 大陸棚을 확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沿岸海域이 沿岸國의 管轄下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海洋水産資源의 2/3이상이 沿岸國의 管理 대상이 되어 세계의 漁業秩序는 큰 變化를 맞게 될 것이며 또한 經濟水域 내지 大陸棚에 부존되어 있는 각종의 鑛物資源 등에 대해서도 沿岸國에 排他的 管轄權이 허용됨으로써 東北亞海域에 있어서도 새로운 海洋法秩序 내지 經濟秩序의 형성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2. 현재 東北亞海域의 秩序樹立과 관련되어 체결되고 있는 여러 條約들과 이를 기초로 各 周邊國들이 시행하고 있는 海洋政策 및 法令들은 다음과 같다.

1) 東北亞海域 周邊國들의 海洋關係 國內立法現況(蘇聯 美國은 除外)

韓 國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1952. 1. 18) 漁業資源保護法(1953. 12. 12) 및 施行令(1970. 7. 21) 領海法(1977. 12. 31) 및 施行令(1978. 9. 20) 海底鑛物資源開發法(1970. 1. 1) 및 施行令(1970. 5. 30) 特別海域設定에 관한 內務部長官 部令(1972. 4. 17) 海洋開發基本法(1987. 12. 4) 海洋汚染防止法(1987. 12. 31) 領海法(1977) 및 施行令(1978)
-----	--

北 韓	經濟水域設定에 관한 政令(1977. 6. 21) 軍事境界水域設定에 관한 宣言(1977. 8. 1) 領海宣言(1958)
中 國	環境保護法(1979) 領海 및 排他的 經濟水域에 관한 宣言(1979)
臺 灣	Law No. 60 on the Regulation of the Fishing by Foreigners(196La)
日 本	Law No. 30 on the Territorial Sea(1977) Law No. 31 on Provisional Measures Relating to the Fishing Zoamende amended by Law No. 83(1977) Enforcement Order of Law No. 31 on Provisional Measures Relatthe Fis the Fishing Zone as amended in 1977(1977)

2) 東北亞海域 周邊國들의 1958년의 제네바 4개 海洋法協約 參與現況(1988년 8월 現在 : 숫자는 加入 또는 批准年度)

國 家	領海協約	大陸棚協約	漁業 및 公海生物 資源保存協約	公海協約
韓 國				
北 韓				
日 本	'68			'68
中 國				
臺 灣				
蘇 聯	'60	'60		'60
美 國	'61	'61	'61	'61

3) 東北亞海域 周邊國들의 1982년의 유엔 海洋法協約에의 署名 및 批准現況(1989년 10월 30일 現在 : 숫자는 署名 또는 批准 年月日)

國 家	署 名	批 准
韓 國	1983/3/14	
北 韓	1982/12/10	
日 本	1983/2/7	
中 國	1982/12/10	
臺 灣		
蘇 聯	1982/12/10	
美 國*		

* 美國은 유엔海洋法協約 採擇을 위한 投票에서 反對한 4個國 가운데 하나임. 但 美國은 最終決定書(Final Act)에는 署名함.

4) 東北亞海域 周邊國들의 海洋管轄權 宣布現況 (1990년 1월 현재 : 단위는 海里)

國 家	領 海	接 續 水 域	排 他 的 經 濟 水 域	漁 業 水 域	大 陸 棚
韓 國	12(일부 3*)			(平和線)	設定
北 韓	12	(軍事水域)	200		"
日 本	12(일부 3**)			200	"
中 國	12	(軍事水域)			"
臺 灣	12		200		"
蘇 聯	12		200		"
美 國	12	12	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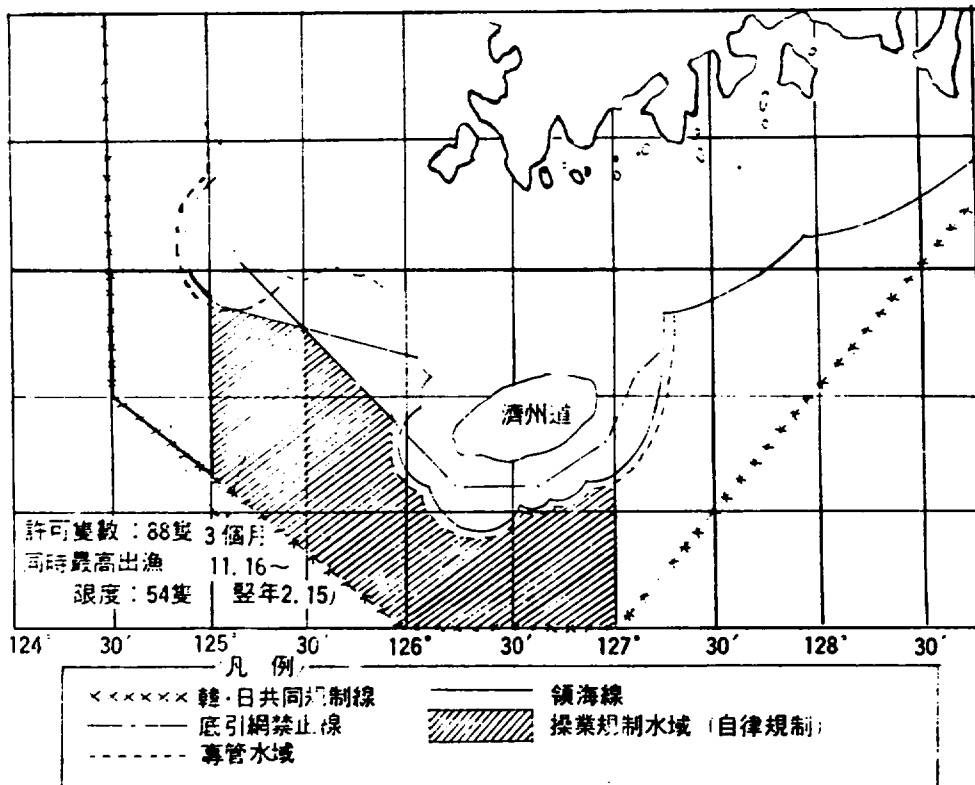
* 일부는 大韓海峽 周邊水域의 경우임

** 일부는 大韓海峽, 對馬海峽, 쓰가루海峽 및 소야海峽의 경우임

5) 東北亞海域 周邊國 相互間의 海洋에 관련된 特別條約締結 現況

分野	内容
漁業	韓國 日本間 漁業協定 (1965) 北韓 中國間 黃海漁業協定 (1959) 北韓 中國間 共同漁業協定 (1972) 日本 中國間 漁業協定 (1972) 北韓 日本間 民間漁業協定 (1984) 日本 蘇聯間 漁業協定 (1977) 韓國 日本間 北海道 및 濟州道周邊水域 操業自律規制에 관한 交換書 輪 (1980) (그림 6 참조)
大陸棚開發	韓國 日本間 大陸棚共同開發協定 (1974년) 韓國 日本間 大陸棚境界劃定協定 (1974년)

<그림6> 濟州道 周邊水域 日側自律規制圖



IV. 韓國을 중심으로 한 東北亞 海洋秩序의 問題點 및 變化展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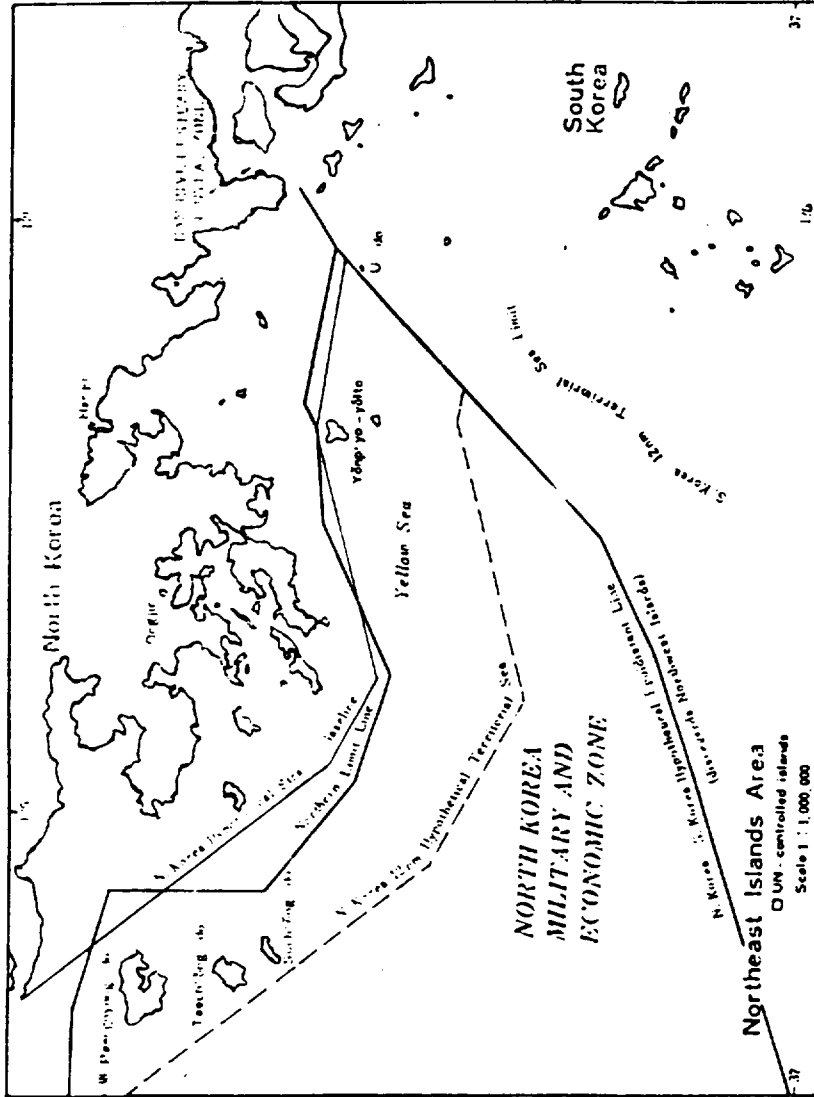
1. 領海의 경우 領海基線(baseline) 또는 基點(basepoint)의 설정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紛爭의 素地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부분적으로 西海5島(白翎島, 大靑島, 小靑島, 延平島 및 隅島) 周邊海域의 法的地位에 관하여 韓國과 北韓間에 紛爭의 素地가 있고 또 장차 大韓海峽에서의 韓日 兩國의 領海擴張이 있게 되는 경우 兩國間의 領海境界劃定의 문제가 爭點으로 등장할 전망이다(그림 7,8참조).

그리고 接續水域의 設定과 관련되는 것으로 中國과 北韓에서 설정하고 있는 軍事水域(military zones)이 그 法的 根據가 확립되어 있는가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그림 9 참조). 현재 軍事水域 내지 安保水域(security zones)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32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1958년 이전까지의 국제사회의 慣行이나 1958년의 領海協約 또는 1982년의 유엔 海洋法協約 등을 볼 때 軍事水域의 설정에 관한 아무런 확립된 原則이나 規定도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은 沿岸國이 領海 外側의 公海上에 軍事水域 또는 安保水域을 설정하여 他國의 船舶出入을 임의로 통제하는 등 安保의 管轄權을 행사할 수 있는 權限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하는 일관된 國際法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1977년 8월 1일에 선포된 北韓의 軍事境界水域은 그 範圍와 管轄權의 내용이 극단적인 것이어서 그 合法性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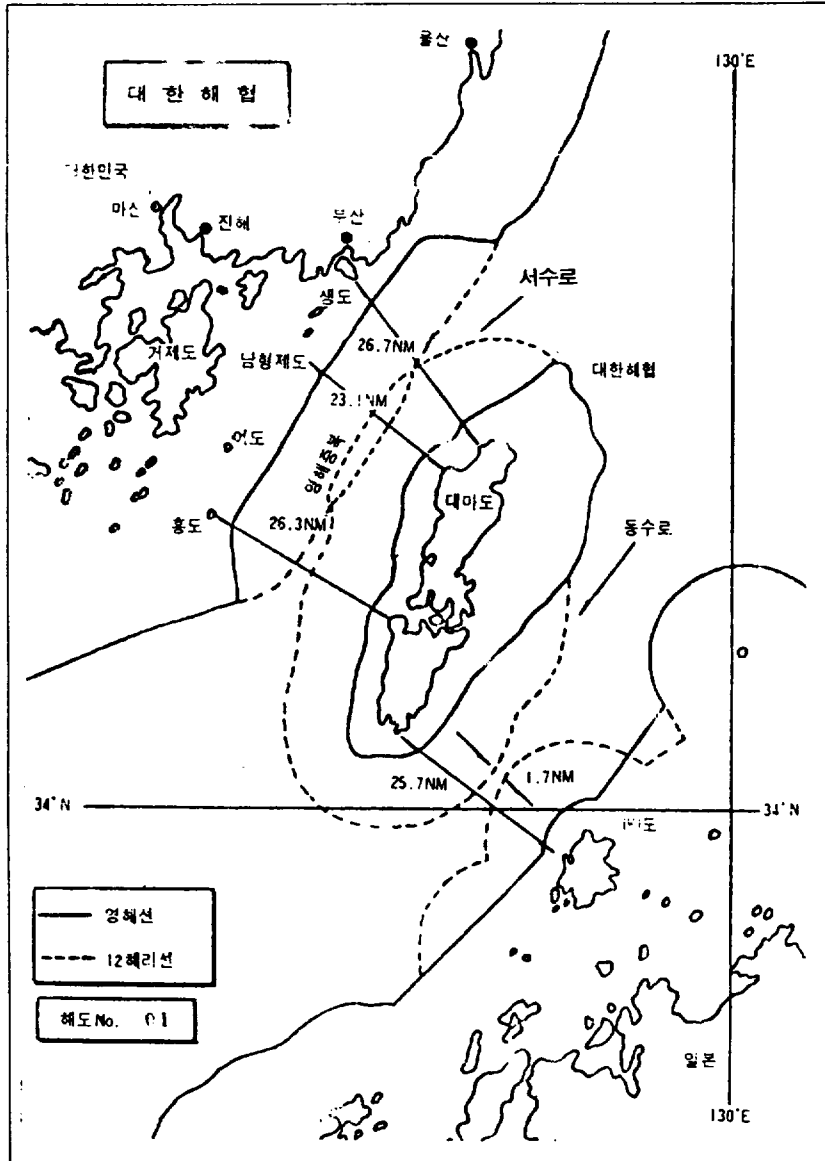
2. 이전부터 여러 國家들에 의하여 주장되고 實行으로 나타나고 있던 排他的 經濟水域(exclusive economic zone)制度가 1982년 유엔 海洋法協約에 규정됨에 따라서 이는 새로운 海洋法秩序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제도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유엔 海洋法協約이 發効되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도 排他的 經濟水域은 이미 하나의 慣習法的 地位를 획득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東北亞海域의 周邊國들 중에서 日本(200해리 漁業水域), 臺灣, 北韓, 蘇聯 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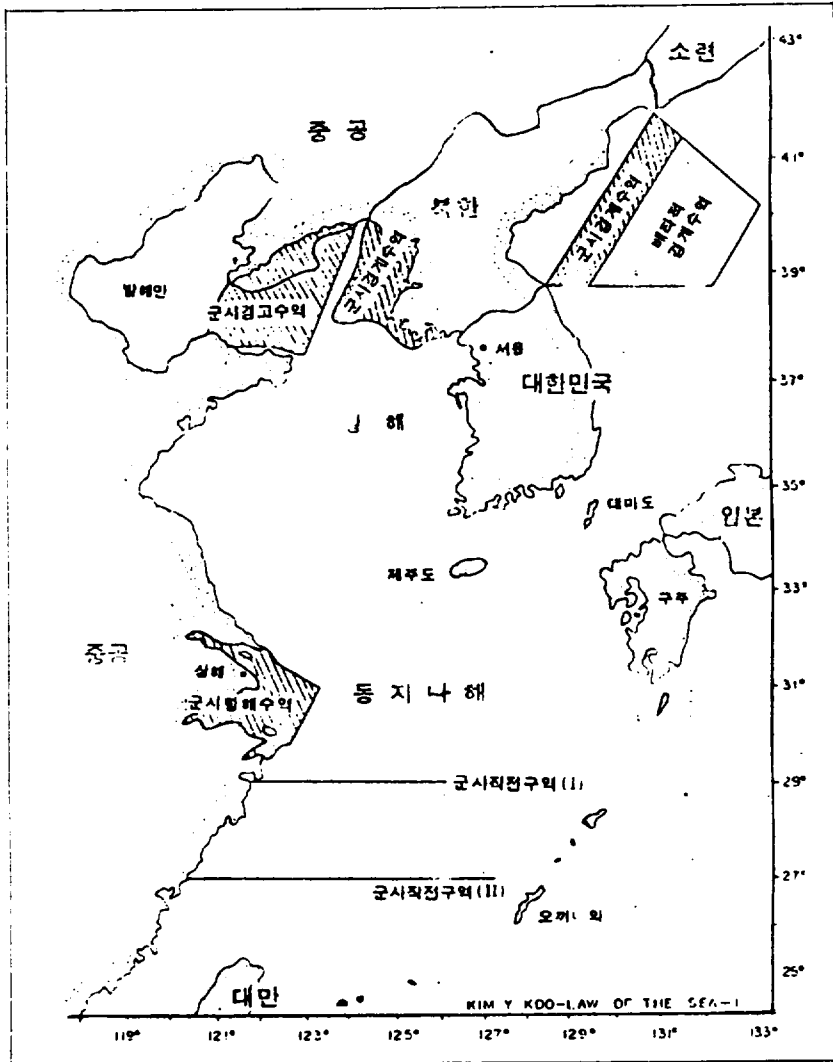
〈그림7〉 서해 5도 주변수역도



<그림8> 대한해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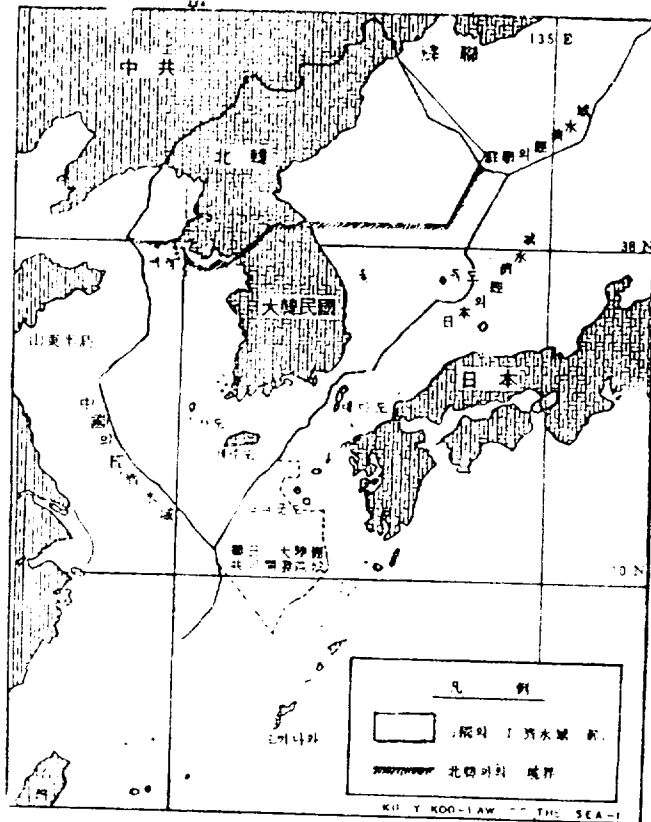


〈그림9〉 中共과 北韓의 軍事水域



고 美國 등이 이미 排他的 經濟水域을 선포하였으며 아직 韓國과 中國만이 이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그림10 참조). 다만 日本은 韓國과 日本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漁業協定體制를 유지하기 위하여 黃海 및 東支那海 그리고 東經 135° 以西의 東海에 있어서 韓國 및 中國漁船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海洋法體制에 비추어 볼 때 韓國과 日本이 유지하고자 하는 漁業協定體制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韓日 漁業協定은 韓國의 漁業管轄權을 극히 제한시키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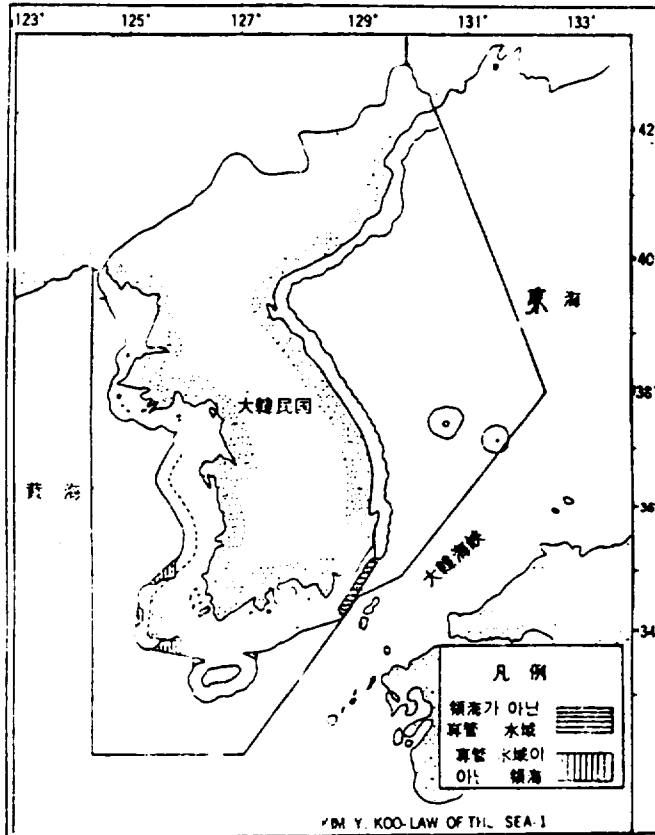
<그림10> 韓國의 200해리 排他的 經濟水域 範圍



을 것일 뿐만 아니라 1977년 이후 韓日 兩國이 각기 선포한 12해리 領海制度에 의하여 漁業協定에 의한 12해리 漁業專管水域이 領海에 포함됨에 따라 韓日 漁業協定上 漁業專管水域의 의미는 사실상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림11 참조).

따라서 韓國으로서 이러한 漁業協定을 폐기하고 유엔海洋法協約에 따른 排他的 經濟水域 또는 200해리 漁業水域을 설정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贊反 兩論이 있는데, 우선 排他的 經濟水域의 설정으로 沿近海漁場의 擴大 및 漁獲增大 그리고 沿近海漁場의 魚族資源保存에 대한 管轄權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근거에 입각하여 한국도 排他的 經濟水域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반면에 韓國은 이제 沿近海漁業의 依存度가 점차 떨어져 가고 있고 이미

<그림11> 韓國의 領海專管水域, 平和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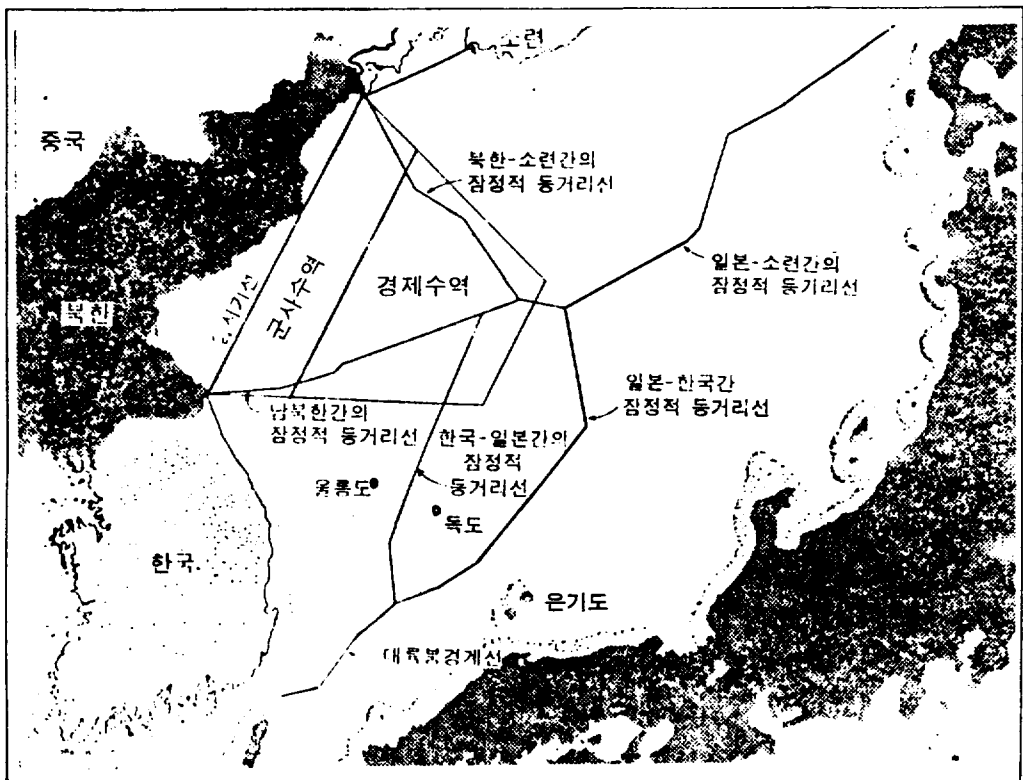


沿近海의 漁業資源이 고갈되어 沿近海漁場確保를 통한 漁獲增大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지속적인 遠洋漁業의 증대를 시도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排他的 經濟水域을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排他的 經濟水域의 설정은 이제 國際社會의 慣行으로 확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沿岸水域의 海底, 地下 및 水中의 모든 生物, 非生物資源에 대한 종합적인 管理, 利用 및 保全을 위하여 國家管轄權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資源 nationalism에 비추어 이를 설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유력해지고 있다. 만일 韓國이 排他的 經濟水域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對備策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① 隣接國(北韓) 및 對向國(中國

및 日本)間的 境界劃定問題, ② 韓日 漁業協定の 改廢問題, ③ 종합적인 資源管轄權의 성격을 갖는 排他的 經濟水域과 海底의 鑛物資源에 대한 管轄權으로서의 大陸棚의 境界의 不一致에 따르는 調整問題—韓日 大陸棚協約의 改正問題, ④ 排他的 經濟水域의 설정으로 이에 포함되게 되는 獨島의 領有權紛爭의 再燃問題(그림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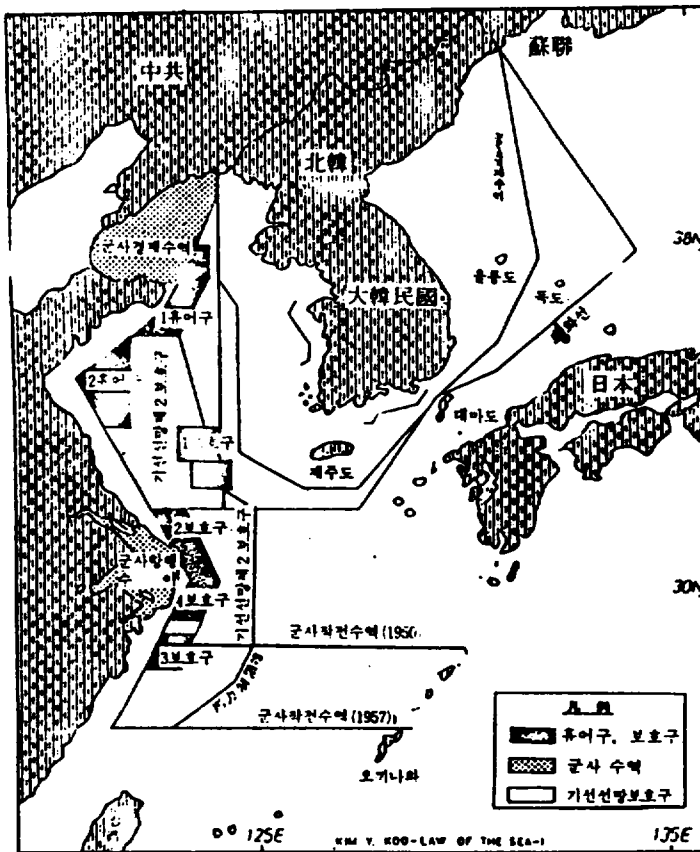
〈그림12〉 동해의 해양관할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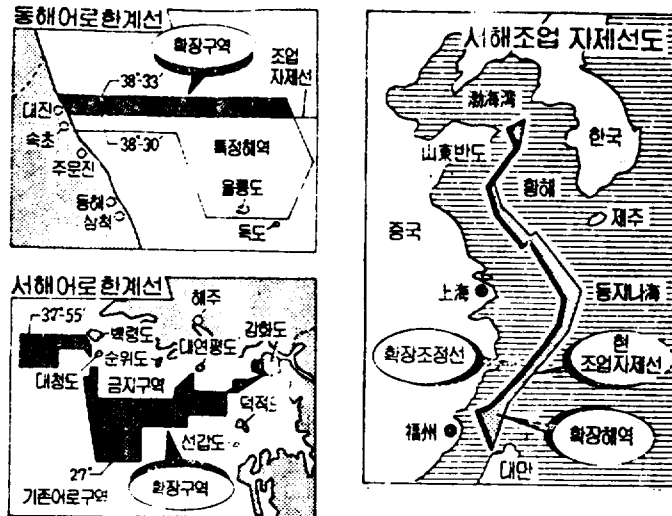
한편 韓國이 1952년에 선포한 '隣接海洋에 대한 主權宣言' 즉 平和線의 法的地位가 문제될 素地가 있다. 法的으로는 여전히 平和線의 효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다만 日本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韓日 漁業協定の 범위에서 그 효력이 정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韓日 漁業協定上 共同規制水域 以遠에서의 日本 漁船의 활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中共漁船 또는 기타 國家들

의 漁船의 平和線 內의 操業에 對해서는 이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國政府는 이러한 規制措置를 실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中日 漁業協定 上 中國의 第1 底引網保護區 및 旋網保護區가 平和線과 重疊되고 있어도(그림11, 13 참조) 이에 對하여 아무런 措置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中國과의 漁業紛爭을 우려하여 '韓國漁船 出漁自主規制區域'을 설정하여 中國이 1950년에 國內法的 措置로 설정한 모택동라인(軍事警戒水域, 軍事航行水域, 軍事作戰水域을 포함하는 機船 底引網漁業禁止區域)으로부터 60해리 以西의 범위까지 韓國漁船의 操業을 금지시키는 등(그림14 참조) 平和線은 사실상 失効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70년의 海底礦物資源開發法에 의하여 劃定되고 있는 鑛區設定이 海底의 鑛物資源의 保護 및 利用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인 資源保護措置로서의 平和線의 劃線과 차이가

〈그림13〉 1975. 일·중공어업협정도



〈그림14〉 동해 및 황해의 한국어로한계선과 조업자제선(조선일보 1989년 4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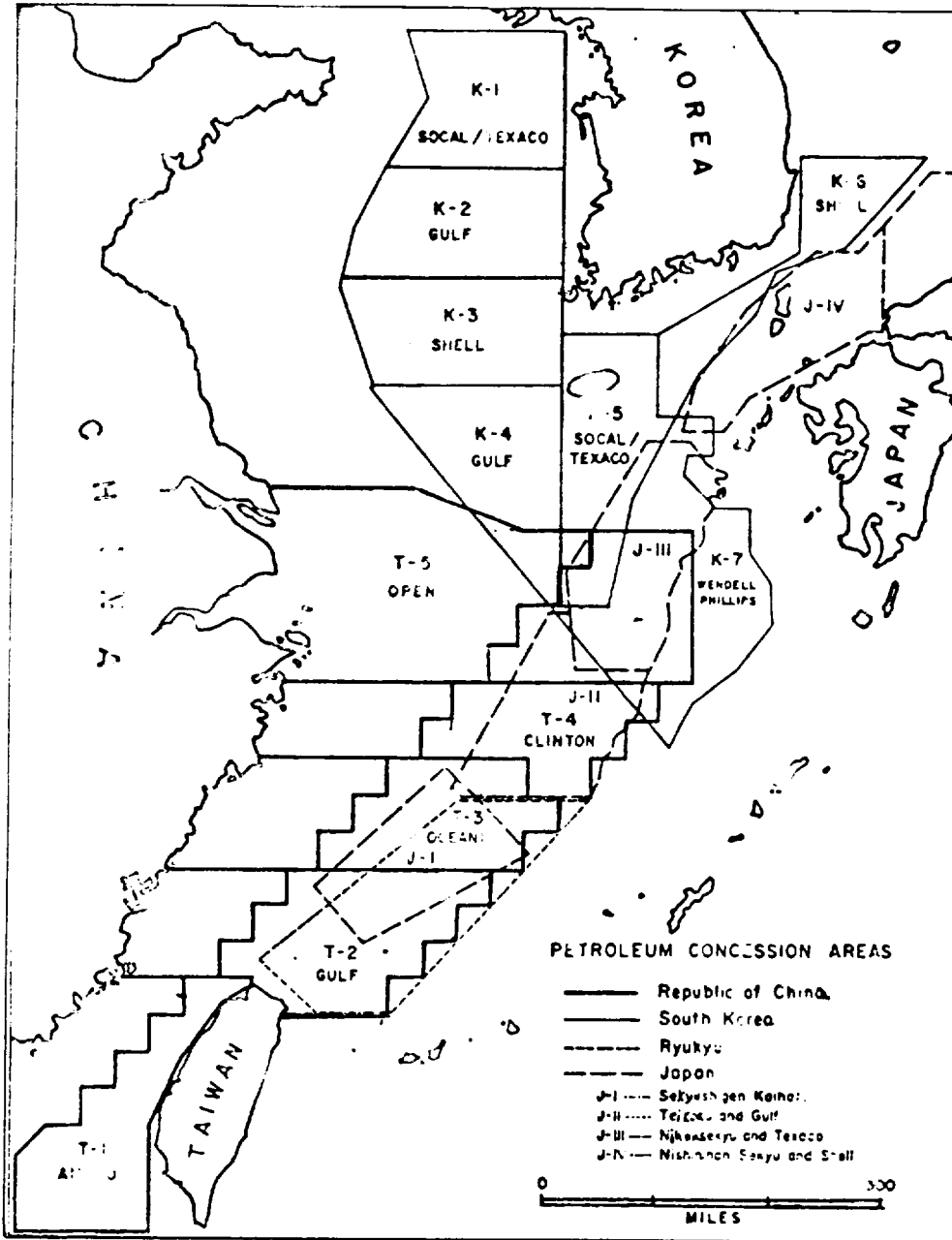


있음을 볼 때 平和線의 存在意義가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韓國과 中國間에 있어서도 우선 民間次元에서라도 漁業協定의 체결을 시도하는 등 합리적인 漁業秩序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東北亞海域 특히 黃海 및 東支那海 周邊國인 韓國, 日本, 中國 간에 共通의 漁業規制措置가 없이 韓國과 日本, 中國과 日本, 나아가서 韓國과 中國間의 개별적인 漁業關係의 설정만으로는 效率的인 漁業規制 내지 協力的 漁業秩序의 수립이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이들 周邊國이 모두 포함되는 地域的 協定이나 機構의 설정을 통한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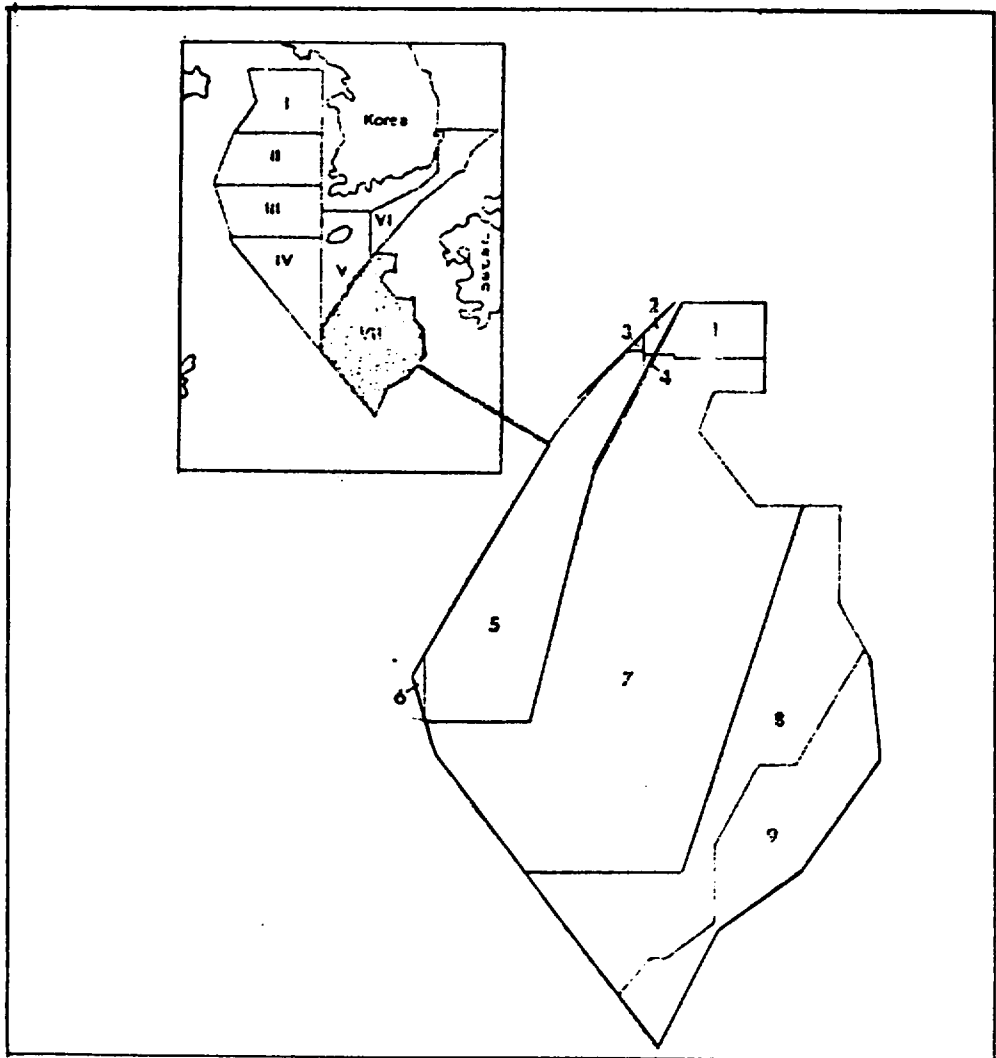
3. 韓國은 1970년 1월에 海底鑛物資源開發法을 制定, 公布함으로써 본격적으로 大陸棚資源探査에 뛰어 들었다. 1970년 5월에 大統領令에 의하여 韓半島 周邊大陸棚에 7개의 海底鑛區가 설정되었는데, 이 중 第5鑛區 이외의 6개의 鑛區가 中國, 臺灣 그리고 日本과의 사이에서 境界劃定의 필요성이 있었다(그림15 참조). 韓國과 日本은 兩國이 설정한 大陸棚鑛區가 서로 겹치는 問題를 해결하고 그 境界를 劃定하기 위하여 곧바로 交渉에 들어가게 되었다. 兩國은 數年에 걸친 協議를 통하여 相互

<그림15> 한국·일본·대만의 대륙붕 영구



의 주장 및 見解에 대하여 論議하고 調整을 시도하였으나, 결국 兩國은 一定 期間 동안 境界劃定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保留하기로 하는 동시에 兩國의 管轄權主張이 겹치는 管轄區域에 대하여 共同開發(joint development)을 하는 方法으로 暫定措置의 성격을 갖는 大陸棚 協定을 체결하여 일단 紛爭을 종결지었다 (그림16 참조). 한편 兩國은 相互間에 비교적 대립이 심하지 않은 大韓海峽 부근의 大陸棚은 中間線의 原則에 따라서 境界를 확정하였다.

〈그림16〉 한일 대륙붕공동개발구역



한편 中國은 다른 國家들이 大陸棚續區를 設定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들과는 달리 大陸棚續區의 設定에 대한 明示의인 宣言을 保留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韓國, 日本, 그리고 臺灣과는 달리 1960년 이후 石油을 자급하게 된 데 起因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中國은 韓日 兩國이 大陸棚 共同開發을 위한 交渉을 행하고 있던 1970년 12월 4일과 共同開發을 위한 協約의 締結 직후인 1974년 2월 5일에 이에 대하여 강력한 抗議를 제기하면서, 大陸棚의 設定 및 開發에 대한 자신의 態度를 표명한 바 있다. 中國은 기본적으로 大陸棚을 領土의 自然的 延長의 概念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中國은 領土의 自然的 延長概念을 적용하여 境界劃定을 함에 있어서 '沈澱物の 堆積'(overlay of sediments)이 바로 大陸棚이기 때문에 中國大陸에서 流出된 土沙의 分布狀態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特別한 地理的 與件으로서 各國의 海岸線의 길이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는 立場인 것으로 보아진다. 이에 따라 黃海大陸棚의 경우 그 3분의 2가 中國의 大陸棚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中國은 前述한 바 있는 斷片的인 發表나 聲明 외에 公式的으로 自國의 領海基線 및 基點의 位置를 비롯하여 大陸棚 등의 管轄水域의 範圍를 밝힌 바 없으며, 그동안 大陸棚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韓國의 協商提議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中國과는 언제라도 領海基線의 設定 또는 境界劃定原則과 관련하여 紛爭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최근에 兩國間의 關係가 점차 改善되고, 한편으로 公式的 또는 非公式的 次元에 있어서 海洋利用에 관한 接觸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海洋境界劃定을 포함한 여러가지 海洋問題에 관하여 論議하고 關聯問題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必要性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中國과 大陸棚境界劃定 問題를 포함한 여러가지 海洋法上의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政府次元 및 民間次元의 종합적인 方案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한 基本原則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課題라고 본다.

4. 韓國의 周邊水域에 있어서는 그 戰略的 중요성에 비추어 外國船舶의 軍事的 活動, 특히 軍艦의 海峽通過와 관련하여 問題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濟州海峽과 大韓海峽의 두 곳이다. 韓國이 1977년에 制定,公布하여 197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領

海法과 유엔海洋法協約上 通航制度를 비교해 보면, 軍艦의 領海의 通航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問題가 제기될 수 있다. ① 韓國領海法上 軍艦의 無害通航權 設定問題, ② 領海法上 國際海峽을 제외한 一般領海에서의 軍艦의 通航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事前通告 (prior notification) 制의 國際法的 根據問題, ③ 유엔海洋法協約上 國際海峽通航制度和 領海法上 無害通航制度의 關係 및 相衡與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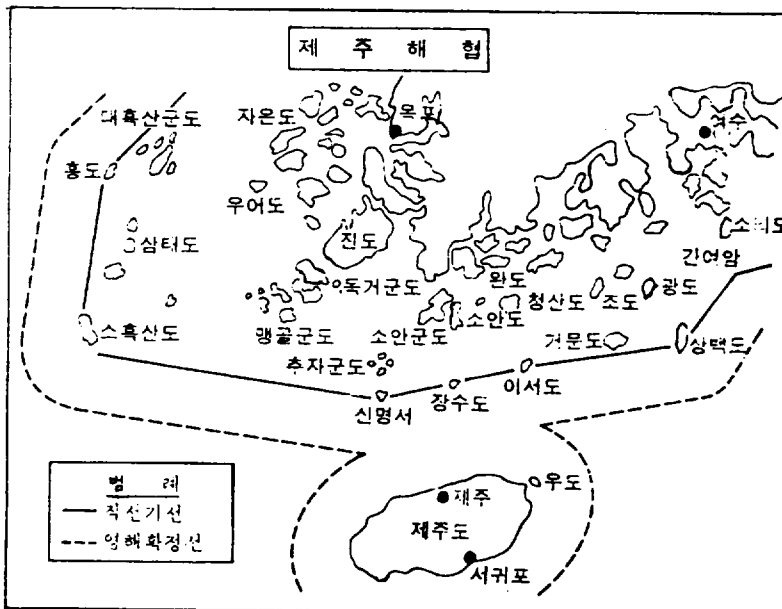
①과 ②의 問題와 관련하여, 유엔 海洋法協約은 軍艦을 포함한 모든 船舶에 대하여 無害通航權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解釋되며, 이점과 관련하여 韓國의 領海法이 領海에 있어서의 軍艦의 無害通航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海洋法의 추세와 부합된다고 본다. 그러나 領海에 있어서의 軍艦의 無害通航에 대하여 事前通告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는 論議의 여지가 있다. 軍艦의 無害通航에 대하여 沿岸國이 事前許可 (prior authorization) 또는 事前通告를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는 유엔 海洋法協約의 解釋問題로 남아 있다. 생각컨대, 事前許可制는 無害通航 그 自體를 禁止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아지나, 事前通告制는 事前에 通告를 하는 경우 軍艦의 通航 그 자체는 許容하는 것을 前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協約上의 無害通航制度和의 兩立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海洋強大國의 軍艦이 이러한 沿岸國의 國內法上의 規制措置를 遵守할지의 문이다. 즉, 海洋強大國들은 스스로 軍事的으로 重要하다고 생각하는 國際航路에서의 自國軍艦의 通航에 대한 沿岸國들의 事前通告의 요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고 實力을 행사해서라도 通航을 시도할 것이 예상된다. 만일 韓國의 領海를 事前通告 없이 통과하는 軍艦은 명백히 韓國의 領海法을 위반하는 것이 되며, 이 경우 韓國政府는 領海法 第8條에 의거하여 이를 위반한 軍艦의 退去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다음, ③의 問題와 관련하여, 유엔海洋法協約은 通過通航이 인정되는 國際海峽으로서, 公海 또는 排他的 經濟水域의 한 부분과 公海 또는 排他的 經濟水域의 다른 部分間의 國際通航에 사용되는 海峽으로 규정하고, 通過通航이라 함은 이러한 海域을 계속적으로 신속히 通過할 목적으로 航行 및 上空飛行의 自由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停止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大韓海峽이나 濟州海峽이 이러한 通過通航이 인정되는 國際海峽이라고 한다면, 韓國의 領海法의 規定과 유엔海洋法協約의 規定의 相違로 말미암아 問題가 생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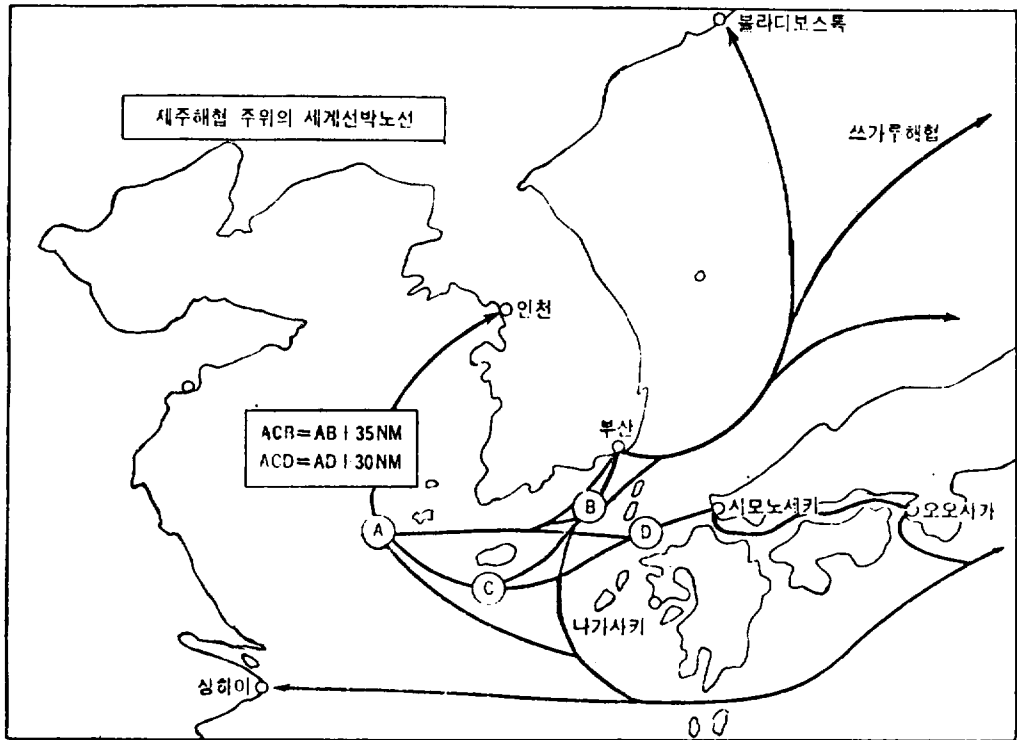
유엔해양法協約은 國際海峽에서의 船舶의 通航과 관련하여 海峽이 海峽沿岸國의 本土와 島嶼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경우, 航行 및 水路上 特徵에 있어서 類似한 便宜를 가진 公海航路 또는 排他的 經濟水域의 航路가 그 島嶼의 海洋側에 존재하는 경우와 公海 또는 排他的 經濟水域의 一部分과 外國의 領海를 연결하는 國際航行에 사용되는 海峽에 대하여는 無害通航制度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航行 및 水路上 特性에 관하여 類似한 便宜를 갖는 公海通航 또는 排他的 經濟水域航路가 國際航行에 이용되는 海峽內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通過通航制度는 적용되지 않으며 領海에 있어서의 無害通航 및 公海上에서의 自由通航만이 인정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規定과 濟州海峽 및 大韓海峽의 特性을 검토해 보면, 濟州海峽의 경우 일단 海洋側에 類似한 便宜를 가진 公海航路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無害通航制度가 적용되는 海峽에 속하며, 大韓海峽인 경우는 그 中間에 公海航路가 존재하므로 역시 通過通航權이 적용될 수 없고, 公海에서의 自由通航과 領海 범위내에서의 無害通航權만이 인정되는 海峽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濟州海峽의 경우 유엔 海洋法協約上의 通過通航制度가 적용되는 國際海峽이라는 反論도 있다(그림 17, 18

<그림17> 제주해협도



〈그림18〉 제주해협주위의 항로



참조). 한편, 현재 大韓海峽인 경우 그 幅이 23해리에 불과하기는 하나 韓國과 日本이 각각 領海의 範圍를 3해리로 설정하고 있어서 中間에 公海帶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領海法과 유엔해양法協約의 抵觸問題 내지 領海境界劃定問題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韓國이 유엔해양法協約을 批准하고 또 이 協約이 發効하게 되면 領海法 및 기타 關係法令을 再檢討하여 유엔해양法協約體制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인 바, 이 경우에 大韓海峽에서의 領海의 範圍를 확장해야 한다는 主張이 많이 나오고 있다. 大韓海峽에 있어서 領海의 範圍를 擴張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주된 理由로서 韓國의 安保上 必要性, 海上事故의 경우 裁判管轄權의 확보, 航海上의 安全事故에 따른 沿岸國으로서의 被害防止, 그리고 通航에 대한 規制權의 政治的 軍事的 利用必要性 등이 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만일 大韓海峽에 대하여 韓國이 12해리의 領海를 설정하게 된다면, 日本도 이에 따라 동일한 措置를 취할 것이 예상되며,

따라서 兩國間에 領海의 境界劃定問題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며 美, 蘇 등의 軍艦의 通過 등 그 사용을 둘러싸고 韓國과의 사이에 紛爭이 야기될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

V. 東北亞海域의 秩序確立 및 協力構築方案

東北亞海域은 좁은 半閉鎖海(semi-enclosed sea)로 되어 있으며 境界劃定을 위한 基線으로부터 상호간 바다의 幅이 400해리를 초과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周邊國들 사이에 海洋境界劃定 자체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半閉鎖海의 특성인 單一生態系(unit ecosystem)를 형성하고 있어서 특정 沿岸國 단독으로 資源을 調査, 管理, 利用 또는 保全하기가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東北亞의 海洋秩序는 개별국가의 國內的 措置 또는 國家間的 特別條約締結만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地域的 또는 國際的 協力體制의 구축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확립될 수 있다. 또한 東北亞海域의 戰略的 重要性에 비추어 東北亞海域國家들의 海洋協力關係가 東北亞의 安定과 平和定着을 위한 필수적인 요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엔海洋法協約은 第123條에서 閉鎖海 및 半閉鎖海에 연한 國家間的 協力을 규정하고 이들은 ㉠ 海洋生物資源의 管理, 保存, 探査 및 利用의 調整, ㉡ 海洋環境의 保護 및 保存에 관한 權利義務施行의 調整, ㉢ 科學調查政策의 調整 및 적절한 경우 海城內 共同科學調查計劃의 실시, 그리고 ㉣ 적절한 경우 本條의 規定을 시행함에 있어서 相互協력을 위한 다른 利害關係國 또는 國際組織의 초청 등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적절한 地域組織을 통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東北亞海域의 地理的 環境의 특징을 고려할 때 특히 海洋環境保全 및 水産資源의 保全 및 管理, 大陸棚資源探査 및 開發, 海洋科學調查에 관한 공동의 利益을 창출하기 위한 規則 및 海洋紛爭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東北亞海域國家들은 地域的 協定の 체결 및 地域的 機構의 창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다. 韓國을 비롯하여 北韓, 日本, 中國 그리고 소련 등이 유엔海洋法協約에 署名當事國으로서 참여함으로써 地域的 協력을 위한 최

소한의 法的 根據는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韓半島를 둘러싼 최근의 國際情勢의 변화가 이러한 協力體制構築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근래 中國과 소련이 開放과 改革政策을 표방하고 과거에 敵對關係에 있던 韓國과의 關係改善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드디어 1990년 9월 30일에는 韓國과 소련간에 國交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日本과 北韓 사이에도 최근에 획기적인 關係改善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韓國과 北韓 사이에도 平和定着 및 相互協力の 분위기가 고조되어가는 시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86년부터 韓國의 海洋研究所(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가 美國의 東西文化센터(East-West Center)와 공동으로 東北亞國家間 海洋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를 계획하고 1987년에 韓國, 中國, 日本 등 관련국의 海洋學者 및 海洋專門家들을 초청하여 회의를 가진 바 있으며, 1988년에는 日本의 Niigata에서 日本의 對内外政策研究所(Institut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주관으로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소련의 太平洋海洋研究所(Pacific Oceanological Institute)의 주관하에 소련의 Nakhodka에서 韓國, 北韓, 蘇聯, 日本, 中共, 美國 및 國際機構 專門家들이 다수 참가하여 東北亞海域(東海)에서의 相互協力を 위한 회의를 가짐으로써 東北亞海域에서의 地域協力體制構築을 위한 시도에 희망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 姜泳勳, 軍艦의 法的 地位, 서울:淵鏡文化社, 1984.
- 金達中 編, 韓國과 海路安保, 서울:法文社, 1988.
- 金榮球, 現代 海洋法論, 서울:亞細亞社, 1988.
- 朴鍾聲, 韓國의 領海, 서울:法文社, 1985.
- _____, 海洋法研究, 서울:檀國大學校 出版部, 1978.
- 朴椿浩·柳炳華, 海洋法, 서울:民音社, 1986.
- 小田 滋, 海の資源と國際法 I, 東京:有斐閣, 1977.
- _____, 海洋法 上卷, 東京:有斐閣, 1973.
- 布施 勉, 國際海洋法序說, 東京:酒井書店, 1988.
- 高林秀雄, 領海制度の研究, 東京:有新堂, 1987.
- _____, 海洋開發の國際法, 東京:有新堂, 1989.
- 山本草二·杉原高嶺 編集, 海洋法の歴史と展望(小田 滋 先生遺曆紀念), 東京:有斐閣, 1986.
- Adede, A. O., *The System for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Dordrecht/ Boston/ Lancaster: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87.
- Attard, David Joseph,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International Law*, Oxford: Clarendon Press, 1979.
- Churchill, R. P. & Lowe, A. V., *The Law of the Sea*,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5.
- Clingan, Thomas A. (ed.), *Law of the Sea: State Practice in Zones of Special Jurisdiction*, Honolulu: The Law of the Sea Institute, University of Hawaii.
- Cuyvers, Luc, *Ocean Uses and Their Regula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4.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elected Documents on the Law of the Sea in Northeast Asia*, Seoul :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85.
- O'Connell, D. P.,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I, II*, Oxford : Clarendon Press, 1984.
- Oda, Shigeru, *International Law of the Resources of the Sea*, Maryland : Sijhoff Publishers, 1980.
- Park, Clyde, *Ordering the Oceans-The Making of the Law of the Sea-*, Toronto and Buffalo :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7.
- Sohn, Louis B. & Gustafson, Kristen, *The Law of the Sea*, St. Paul, Minn. : West Publishing Co., 1984.
- UN, *The Law of the Sea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ith Index and Final Act of the Third UN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New York : United Nations, 1983.
- UN, *The Law of the Sea 'Current Developments in State Practice'*, New York : United Nations, 1987.
- UN, *The Law of the Sea 'Maritime Boundary Agreements(1979~1984)'*, New York : United Nations, 1987.
- Walsh, D.(ed.), *The Law of the Sea*,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7.
- 姜泳勳, “通過通航制度”, 「國際法學會論叢」第30卷 第1號, 1985.6.
- _____, “無害通航權의 諸問題點 및 對策”, 「海洋政策研究」第1卷 第1號, 1986.12.
- 權文相·鄭聖哲, “黃·東支那海의 魚族資源管理에 관한 共同協力 方案”, 「海洋政策研究」第5卷 第1號, 1990. 봄.
- _____,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6.
- 金得柱, “軍艦의 他國領海 無害通航 問題”, 「海洋政策動向」第12號, 1984.9.
- _____, “軍艦의 領海 無害通航權에 대한 소련의 態度”, 「國際法學會論叢」第33卷 第2號, 1988.12.

- 金明圭, “海洋法の 變遷過程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第23卷 第1·2號, 合併號, 1978.
- 金明基, “北韓의 經濟水域宣布와 西海 5島”, 「北韓」, 1977.9.
- _____, “海洋法協約上 大韓海峽의 通航問題”, 「國際法學會論叢」第28卷 第2號, 1983.12.
- 金富燦, “海洋法協約上 紛爭解決制度와 我國海洋紛爭發生時 對應方案”(外務部學術用役報告書), 1988.12.
- _____, “海洋紛爭解決制度에 관한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7.
- 金榮球, “새로운 海峽通過制度와 韓國安保”, 「韓國과 海路安保」, 1988.
- 金楨鍵, “韓國과 北韓의 海洋制度에 대한 小考”, 「延世行政論叢」第7輯,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1981.
- _____, “第3次海洋法會議에서의 北韓의 態度에 대한 회고” 「韓國과 海路保安」, 1988.
- 金燦奎, “유엔 海洋法協約과 韓·中共 大陸棚境界劃定”, 「海洋政策動向」第5號, 1984.2.
- _____, “大陸棚에 대한 中國의 態度”, 「考試界」通卷 85號, 1981.4.
- 盧明濬, “大陸棚을 圍繞한 國際紛爭과 協力 - 韓半島周邊國들을 중심으로 -”, 「國際問題」第45號, 1974.5.
- _____, “韓·中共間의 漁業關係 및 大陸棚의 法的 地位”, 「國際法學會論叢」第23卷 第1·2號 合併號, 1978.
- 朴鍾聲, “第3次 海洋法會議의 歷史的 意義”, 「國際法學會論叢」, 第27卷 第1號, 1982.9.
- _____, “軍事境界水域”, 「現代國際法論」.
- _____, “北韓의 海洋法 問題”, 「韓國과 海路安保」, 1988.
- 朴稚榮, “北韓과 經濟水域의 問題”, 「國際法學會論叢」第33卷 第2號, 1988.12.
- 沈義燮, “蘇聯의 極東開發과 海洋戰略”, 「海洋政策研究」第4卷 第3·4號, 1989. 가을·겨울.

- 柳炳華, “西海 5島 島嶼群 周邊水域의 法的 問題”, 「梧谷 鄭雲章博士華甲紀念論文集」 1989.5.
- 柳時融, “遠洋漁業의 漁業環境變化와 國際化推進戰略”, 「海洋政策研究」 第4卷 第1號, 1989. 봄.
- 李相禹, “蘇聯海軍增強과 東北亞海路安全”, 「韓國과 海路安保」, 1988.
- 李瑞恒, “韓日 漁業協定 20년의 評價”, 「國際法學會論叢」 第30卷 第2號 1985.12.
_____, “韓國의 海洋管轄權 主張”, 「韓國과 海路安保」, 1988.
- 李錫龍, “우리나라의 海洋境界劃定에 관한 研究”, 「海洋政策研究」 第4卷 第1號 1989. 봄.
- 李英峻, “新海洋法秩序에 따른 國內漁業問題”, 「海洋政策動向」 第18號, 1985.3.
_____, “韓國水産業의 問題點 및 法制에 관한 研究”, 「國際法學會論叢」 第30卷 第1號 1985. 6.
- 李永鎮, “北韓의 海洋法과 海洋政策”, 「韓國과 海路安保」, 1988.
- 張昌翼, “黃海 및 東支那海의 水産資源 共同調查研究의 提言”, 「海洋政策研究」 第3卷 第4號, 1988. 겨울.
- 池楨日, “經濟水域 採擇에 대비한 我國의 沿近海 및 遠洋漁業의 保護를 위한 政策 方向”, 1977. (外務部 國際法規課 資料).
_____, “韓·美·日의 漁業關係의 爭點 및 紛爭解決策”, 「國際法學會論叢」, 第23卷 第1·2號 合併號, 1978.
- 咸秉春, “海洋法에 관한 韓國의 觀點”, 「韓國과 海路安保」, 1988.
- 許亨澤, “黃·東支那海에 있어서 地域協力”, 「海洋政策動向」, 1985.3.
- Alexander, Lewis M., “The Ocean Movement: Inventory and Prospect”, *San Diego Law Review*, Vol. 20, 1983.
- Dickey, Margaret L., “Freedom of the Sea and the Law of the Sea: Is What's New for Better or Worse?”,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5, 1978.
- Juda, Lawence, “UNCLOS III and the New International Order”,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7, 1979.

- Kim, Byung-chin, "The Northeast Asian Continental Shelf Controversy : A Case Study in Conflict Resolution Among South Korea, Japan, China (PRC) and Taiwan (ROC)",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1980.
- Lee, Seo-hang , "South Korean Marine Policy and the Law of the Sea", Kent State University Ph.D. Dissertation.
- Lee, Wei-Chin, "Troubles under the Water : Sino-Japanese Conflict of Sovereignty on the Continental Shelf in the East China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18, 1987.
- Lowe, A.V., "Som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the Use the Seas for Military Purposes", *Marine Policy*, Vol. 10, 1986.
- Mangone, Gerard J., "Straits Used for International Naviga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18, 1987.
- Nakauchi, Kiyofumi, "Problems of Delimita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ea of Japa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6, 1979.
- Park, Choon-ho, "Oil under Troubled Waters : The Northeast Asia Sea-Bed Controversy",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14, 1973.
- _____, "Fishing under Troubled Waters : The Northeast Asia Fisheries Controversy",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 1974.
- _____, "The 50-mile Military Boundary Zone of North Korea",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72, 1978.
- _____,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 Who Owns the Islands and the Natural Resource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5, 1978.
- Simmonds, K. R., "The Statu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34, 1985.
- Sinjela, A. Mpazi, "Land-Locked Stated Right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 Sea",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0, 1989.
- Smith, Robert W., "Global Maritime Claim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0, 1989.
- Valencia, Mark J., "Northeast Asia : Petroleum Potential, Jurisdictional Claim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20, 1989.
- Yuan, Paul C., "China's Jurisdiction Over Its Offshore Petroleum Resources",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 12, 1982~1983.